

# 공 보

**제433호 2014. 6. 18.(수)**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4-61호 도로명주소 고시.....2  
 거창군 고시 제2014-6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3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4-552호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4  
 거창군 공고 제2014-559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8  
 거창군 공고 제2014-560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3  
 거창군 공고 제2014-563호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17

회 람									
--------	--	--	--	--	--	--	--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6. 1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빼재로 2115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시 제2014 - 6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06월 18일

### 거 창 군 수

신 청 인	거창군수 (상하수도사업소)	주 소	경상남도 거창군·읍 중앙로 103
하 천 명	무촌천(지방하천)		
공 사 (점용 · 사용) 개요	위 치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1855-7번지외 1필지	
	면 적	97m <sup>2</sup>	
	점용기간	2014년 06월 18일부터 ~ 영구	
	목 적 및 사 유	하상 하수관로 설치	

##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3일

### 거 창 군 수

#### 1. 제정대상 조례명 :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2. 제정사유

-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함
-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적 통합 실현을 위하여 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비문해 성인의 안정적 학습환경 구축

#### 3. 주요내용

##### 가. 대 상

-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불문

##### 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비문해자 조사 실시
-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 육성
-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학력 인증제에 필요한 지원
-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다. 공동추진

-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라. 공공시설의 이용

-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 하도록 함

마. 경비 지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창조정책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 우편번호 607-807) ] 에게 서면이나 메일로(pjo6825@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건의사항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http://www.geochang.go.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공고/고시란을 참조하시거나 창조정책과 교육진흥담당 ☎(055)940-3681] 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거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충분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성인과 거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연구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학력 인증제에 필요한 지원

##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창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 거창군수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창조도시 완성을 위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함.

#### 2. 주요내용

##### ① 명칭변경

- 창조정책과 → 창조산업과
- 경제과 → 승강기경제과
- 농촌활력과 → 마을만들기과
- 교육진흥담당 → 평생교육담당
- 기업유치담당 → 투자유치담당
- 승강기산업담당 → 승강기밸리담당
- 귀농육성담당 → 귀농귀촌담당

##### ② 담당 신설 : 창조산업담당(창조산업과)

##### ③ 담당 폐지 : 자전거담당 폐지

##### ④ 담당 이동

- 승강기담당(창조정책과 → 승강기경제과)



- 마을만들기담당(창조정책과 → 마을만들기과)
- 에너지담당(경제과 → 창조산업과)
- 식품가공담당(농축산과 → 마을만들기과)
- 농업지원담당(농촌활력과 → 농축산과)
- 농기계관리담당(농촌활력과 → 농축산과)

#### ⑤ 업무이관

- 도시경관조성, 공공디자인 계획 및 시행 : 창조정책과 → 도시건축과
- 자전거담당 소관업무 : 창조정책과 →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 3. 개정 조례·규칙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 우편번호: 670 - 807,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69  
이메일: doliim@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붙임]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연월일	2014.6
제 출 자	행정과장

### 1. 개정이유

-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창조도시 완성을 위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부서명칭변경 및 부서장의 사무를 조정함(안 제3조, 제7조)

##### ○ 명칭변경

- 창조정책과 → 창조산업과
- 경제과 → 승강기경제과

##### ○ 분장사무 조정

- 창조정책과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 도시건축과로 이관  
승강기밸리조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 → 승강기경제과로 이관  
자전거도로 개설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사항 → 도시건축과로 이관  
창조도시 완성에 관한 문화사업에 관한사항 : 분장사무 신설
- 승강기경제과  
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사항 → 창조산업과로 이관
-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 : 분장사무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그 밖 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4.6.16 ~6.26)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연월일	2014. 6
제 출 자	행정과장

## 1. 개정이유

-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창조도시 완성을 위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함

## 2. 주요내용

### 가. 부서명칭변경 및 부서장의 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9조, 제20조)

#### ○ 명칭변경

- 창조정책과(장) → 창조산업과(장)
- 경제과(장) → 승강기경제과(장)
- 농촌활력과(장) → 마을만들기과(장)

#### ○ 분장사무 조정

##### - 창조정책과

-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업무 → 도시건축과로 이관
- 승강기밸리조성에 관한업무 → 승강기경제과로 이관
- 승강기산업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 유치·지원에 관한 업무  
→ 승강기경제과로 이관

마을개발사업 총괄 → 마을만들기과로 이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업무 → 도시건축과로 이관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및 설치에관한 업무 → 도시건축과로 이관

##### - 승강기경제과

에너지자립도시에 관한 업무 → 창조산업과로 이관

#####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식품가공담당업무 → 마을만들기과로 이관

##### -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농업지원담당 업무 → 농축산과로 이관

농기계관리담당 업무 → 농축산과로 이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그 밖 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4.6.16 ~6.26)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공고 제2014-560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6일

거창군수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부서별 정원조정(인)**

구분	정원			증감내역	비고	
	당초	변경	증감			
계	658	658	0			
창조정책과	19	15	-4	감3(행·농·시6급 1, 행7급 1, 행·시7급 1) 감2(행 8급 1, 행·시 8급 1) 증1(행 8급 1)		
경제과	17	17	0			
도시건축과	22	24	2	행정 8급 1, 행·시 8급 1		
농업기술센터	계	62	65	3	행·농·시6급 1, 행 7급 1, 행·시 7급 1	
	농축산	21	27	6	증4(지도 3, 행·농8급 1) 증5(지도 1, 운전 9급 1, 기계운영9급 2,	농업지원 농기계

					행·공·농7급 1) 감3(지도 2, 행·농7급 1)	식품가공
	농업소득	21	21	0		
	농촌활력	20	17	-3	증3 (행·농·시6급 1, 행7급 1, 행·시 7급 1) 감4 (지도 3, 행·농8급 1) 감5(지도 1, 운전 9급 1, 기계운영9급 2, 행·공·농7급 1) 증3(지도 2, 행·농7급 1)	마을만들기 농업지원 농기계 식품가공
	가조면	17	16	-1	감 1(행정8급 1)	

### 3. 개정 조례·규칙안 : 붙임

### 4.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4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 우편번호: 670 - 807,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69  
이메일: doliim@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연월일	2014. 6
제 출 자	행정과장

<p><b>1. 개정이유</b></p> <p>○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p>
<p><b>2. 주요내용</b></p> <p>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p> <p>○ 기관별 정원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 668명{본청292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5명(농업기술센터62 보건소 63), 사업소51명, 읍38명, 면148명}</li> <li>- 조정 : 668명{본청290명, 의회14명, 직속기관128명(농업기술센터65, 보건소63), 사업소51명, 읍38명, 면147명}</li> </ul> <p>○ 일반직 6급 이하 정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 596명{본청275명, 의회11명, 직속기관91명(농업기술센터30 보건소61), 사업소45명, 읍37명, 면137명}</li> <li>- 조정 : 596명{본청273명, 의회11명, 직속기관94명(농업기술센터33, 보건소61), 사업소45명, 읍37명, 면136명}</li> </ul>
<p><b>3. 참고사항</b></p> <p>가. 관계법령</p> <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p> <p>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p> <p>다. 그 밖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같음</li> <li>(2) 입법예고(2014.6.16 ~ 6.26)</li> <li>(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li> </ul>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연월일	2014. 6
제 출 자	행정과장

<p><b>1. 개정이유</b></p> <p>○ 행정기구 개편으로 일반직공무원의 기관별 업무량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p>
<p><b>2. 주요내용</b></p> <p>가. 기관별 정원 조정함(안 별표)</p> <p>○ 기관별 총정원 : 증감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청 : 292 → 289(감3명)</li> <li>- 농업기술센터 : 62→ 65(증3명)</li> </ul> <p>○ 일반직 6급 : 증감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농·시 6급 : 본청 2 → 1(감1명), 농업기술센터 0→ 1(증1명)</li> </ul> <p>○ 일반직 7급 : 증감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7급 : 본청20 → 19(감1명)      농업기술센터 0→ 1(증1명)</li> <li>- 행·시 7급 : 본청 12 → 11(감1명), 농업기술센터 0→ 1(증1명)</li> </ul> <p>○ 일반직 8급 : 증감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 8급 : 본청 20→ 21(증1명), 면 3→ 2(감1명)</li> </ul>
<p><b>3. 참고사항</b></p> <p>가. 관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li> <li>○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 및 제5조</li> </ul> <p>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p> <p>다. 그 밖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같음</li> <li>(2) 입법예고(2014.6.16 ~ 6.26)</li> <li>(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li> </ul>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6. 17

### 거 창 군 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안

#### 2. 개정취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여, 공설시장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3. 개정내용

- 사용권 양도금지, 원상회복, 변상금을 삭제함(안 제8조, 20조, 2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3항, 제81조, 제83조와 중복
-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 (현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변경)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7. 7일까지 거창군 경제과(☎940-3371)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연월일	2014. 6 . .
제 출 자	경제과장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여, 공설시장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사용권 양도금지, 원상회복, 변상금을 삭제함(안 제8조, 20조, 2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3항, 제81조, 제83조와 중복

#### 나.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

- (현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변경)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3항, 제81조, 제83조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6.17 ~ 2014.7.7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

(5) 성별영향분석 :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공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 (사용권 양도금지)</u>  <u>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u></p>	<p>&lt;삭 제&gt;</p>
<p><u>제12조(사용료 반환 금지)</u>  <u>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u></p>	<p><u>제12조(사용료 반환)</u>  <u>공설시장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그 사용료를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한다.</u></p>
<p><u>제20조(원상회복)</u>  <u>시장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u></p>	<p>&lt;삭 제&gt;</p>
<p><u>제21조(변상금)</u>  <u>공설시장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u></p>	<p>&lt;삭 제&gt;</p>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 83조(원상복구 명령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경제과)

( 제정) 1971.01.05 조례 제 154호

(일부개정) 1974.02.14 조례 제 245호

(일부개정) 1977.02.09 조례 제 334호

(일부개정) 1978.09.20 조례 제 416호

(일부개정) 1979.07.18 조례 제 458호

(일부개정) 1982.06.29 조례 제 612호

(일부개정) 1985.12.31 조례 제 875호

(일부개정) 1985.12.31 조례 제 875호

(일부개정) 1989.08.21 조례 제1080호

(일부개정) 1990.09.29 조례 제1154호

(일부개정) 1999.07.15 조례 제1521호

(일부개정) 2000.11.15 조례 제1597호

(일부개정) 2001.01.13 조례 제1610호

(전문개정) 2006.01.12 조례 제178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 제 1 장 총칙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시설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라 함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 2 장 임시시장

### 제 3조 (개설 및 시설기준)

- ①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대지면적 300㎡ 이상
  2. 옥내 임시시장의 개설기준은 바닥면적 150㎡ 이상
- ③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 4조 (개설신청 및 지정)

-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임시시장개설 지정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자
  2.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 제 5조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경우
3. 제3조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 6조 (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 사업 완료시까지로 하며, 군정시책상 개설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3 장 공설시장 사용

#### 제 7조 (공설시장의 사용허가)

-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을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과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변경시(설비포함)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 함으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공설시장의 상설점포 사용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09.12.30, 조례 제1953호 부칙 제4조제3항>

#### 제 8조 (사용권 양도금지)

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외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다.

#### 제 9조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시장 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시장을 오손하였을 때
4. 기타 질서유지상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 제 4 장 사용료

#### 제 10조 (사용료)

-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사용일수가 16일이상일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액 전액을, 15일이하일 때에는 그 반액을 징수한다.
-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 11조 (사용료 납기)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는 일액으로 하되 개장일에 군수가 지정하는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 12조 (사용료 반환 금지)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13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시장변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 14조 (시장관리인)



① 시장의 관리인은 시장소재 읍·면장으로 하며, 시장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장사용료의 징수
2. 시장 점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3.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관리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

② 읍·면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변영회나 시장관리와 관련 있는 자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와 질서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 5 장 위탁운영

##### 제 15조 (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수탁자의 선정은 시장변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로 결정하되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금액을 낙찰자로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장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 16조 (계약보증금)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군금고에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다.

##### 제 17조 (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거창군 내의 주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 제 18조 (계약금액 납부)

① 수탁자는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연납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하거나 보증보험회사로 하여금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 19조 (계약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 6 장 보 칙

##### 제 20조 (원상회복)

시장사용자가 허가 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시킬 수 있다.

##### 제 21조 (변상금)

공설시장을 군수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자는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다.

##### 제 22조 (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의 지정취소
2. 제9조에 의한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정지
3. 제19조에 의한 위탁계약해제

##### 제 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